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2. 23. 오세희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2024. 12.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2. 1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4. 17.)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11.) 상정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2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
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오세희의원)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유통만 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인규)

개정안은 이 법의 주요용어인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

정하려는 것임. 즉,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자 함.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을 제시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를 규정하고 있음¹⁾²⁾.

이러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를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생산하고 유통만 중소기업(유통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등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포함³⁾하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법률에서 규정하되,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의 제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 혜택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의 공공구매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의 제도도입 취지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 제품 적용범위가 달라지는 제도변경이 발생하므로, 구매목표 설정 및 실적 평가가 일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일 및 경과조치 규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⁵⁾.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정안의 입법취지대로 법을

3) 실제 법제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중 물품에 관한 구매실적의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한 구매실적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하고 있음.

4) 국회의원 오세희 보도자료, “오세희 의원, 중기제품 의무구매 실적 허점 차단 ‘판로지원법’ 대표 발의”, 2024. 12. 23일자.

5)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도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설정한 구매실적은 종전에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개정하는 경우 제도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가 일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변경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의 “직접 생산” 문구의 경우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 생산 확인”과 혼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생산”으로 수정하고,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한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가 일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집계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마련하고,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의2 중 “직접 생산하는”을 “생산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제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후단신설></u>	제2조(정의) ----- ----- -----. 1. (개정안과 같음) <u>1의2. -----</u> ----- ----- <u>생산하는</u> ----- ----- - <u>이 경우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u>부칙</u> <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2. ~ 6. (개정안과 같음) <u>부칙</u>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중소기업제품</u>

		<u>구매실적에 관한</u> <u>경과조치) 이 법</u> <u>시행 전에 공공</u> <u>기관의 장이 제5</u> <u>조에 따라 중소</u> <u>기업제품을 구매</u> <u>한 실적은 제2조</u> <u>제1호의2의 개정</u> <u>규정에도 불구하고</u> <u>종전의 규정</u> <u>에 따른다.</u>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제2조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